

확산원인 분석

HPAI 확산 원인 재조명

- 재래·유통시장 등 방역관리 강화 조치 -

지난달 4월 25일 정부당국은 재래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 계란을 포함한 가축의 유통상인과 수송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지난 5월 16일부터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닭·오리는 AI 검사 및 증명서를 휴대키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이유인 즉, 지난 03/04년도와 06/07년도 AI가 발생했을 때와 달리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금년 AI 발생현황과 재래시장과 유통차량 등 허술한 방역체계에서 비롯한 확산 원인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정리했다.

- 홍보팀 -

가든 식당에서 AI 발생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08.05.23) 3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신고는 끊이질 않고, 추가 발생이 지속되면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첫 발생일로부터 12일 뒤 가든 식당에서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 됐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이 식당은 첫 AI 발생지인 김제시 용지면 소재 농장과 관련 있는 곳으로 김제 경찰서 및 정부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를 반출한 유통업자 2인이 첫 발생지인 김제시 용지면 방역 구간 내 농장에서 오리 600여 마리를 밀반출했고, 이 유통업자는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일대 5~6개 농장과 충남 천안 양계장까지 옮겨 다니며, 가금류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오리 40여 마리는 김제 시내 식당에 판매했고, 나머지 540여 마리는 부안, 김제, 군산, 익산 등지의 식당에 판매되면서 정부 당국은 이 식당을 포함해 최초 발생일(4.1일) 기준 21일 이전 3.11일부터 출입한 곳의 닭·오리에 대해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이동제한 조치된 농장에서 밀반출시킨 농장주와 유통업자 2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조치됐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밀반출 사건은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례로 유통업자로 인해 출입 농장 및 식당까지 살처분 되면서 막대한 정부지원 자금이 손실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강화할 뜻을 밝혔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가금류 AI 발생으로 이어져 도심지까지 확산

서울 광진구에 이어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도 HPAI가 발생했으며 부산 해운대·기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했다. 일대 등 도심지에서 AI가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일 신고된 서울 광진구청 청사 구내 동물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닭, 오리, 꿩, 칠면조 등 57마리 가운데 4마리가 지난 28일부터 폐사되면서 사상 처음 도심지에서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5월 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불법농장에서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서 사육하고 있던 오리 1,960수를 살처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방역 당국은 발생원인으로 추정되는 성남 소재 재래시장에 대해 지난 4월 25일 재래시장 가금류 거래 금지와 판매 시설을 잠정 폐쇄 조치하면서 이전 이 시장을 출입한 유통상인 6명과 이들에게 가금류를 공급한 충남 등 13곳의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안성, 강원도 춘천 등에서 발생한 HPAI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는 유통 차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사육농가 단속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따르면, 문정지구 등

표1. AI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조치 보완·강화 정부 지침

①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시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 닭·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관할 시·군·구에 검사신청 ⇒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공익수의사 또는 지방 공수의가 임상검사 ⇒ 도축장 소속 검사원이 “임상검사증명서” 확인·도축
②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현행) 일일 소독·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 (강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AI 진정 시까지 자진 폐쇄 유도 ○ 자진 폐쇄 당시 보유중인 닭·오리 살처분 시가 보상(농식품부) ○ 상설시장내 닭·오리 판매 상인에 대한 영업피해는 지자체 부담
③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	○ 닭·오리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 협조 길거리 단속)
④ AI 진정 시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제한	○ 계분 비료공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차량에 대해 소독 후 기록해준 “소독실시기록부”를 점검 ○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 협조 길거리 단속)
⑤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 대상 : 4,495농가, 50여만 마리
⑥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	○ 공공시설 및 소·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던 소독을 닭·오리 사육농가로 전환 실시



1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5천여 마리, 장지지구 15개 농가에서 3천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농업용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자치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농가는 구청의 허가 없이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농가는 토지보상법상 닭은 200마리, 오리는 150마리 이상 키우면 축산농가로 인정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공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고 상가입주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확산을 방지하고, 불법사육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사상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1만5천수를 긴급 살처분했고, 전국의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 지난 14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AI 중앙단속반 실시 등 방역 강화

다 차례 추가 발생으로 당정은 방역이 허술한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가든식당 등에서 불법 자가 도축을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상설 재래시장·5일장·가든 식당·닭집 등 닭·오리를 운송(출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08.05.13~5.30일까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 일제 단속'을 시행했으며,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 합동으로 중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상설 재래시장에 출입하는 닭·오리 운반 차량의 소독 실시 및 소독 실시 기록부 소지 여부(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와 △5일장의 가금을 판매제한 이행 여부 및 판매 시 운반차량 소독 여부, △가축 운송차량이 가축 사육시설,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 소독 실시여부를 주 내용으로 단속한다.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기록부는 가축 운송차량이 가축 사육시설, 집합시설, 장소를 출입할 때마다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을 의무화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제 2항에 의거)의 과태료(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제2항)가 부과된다. **양계**